학위수여에 관한 규정

제 정: 1998. 03. 01

최근개정 : 2017. 11. 08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목원대학교 산업정보언론대학원에서 수여하는 석사학위에 관한 세부 시행 세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- **제2조(학위취득자격)** ① 소정의 등록을 마치고 다음 각 호의 과정에 합격한 자에게 석사학위를 수여한다.
 - 1. 24학점 이상 취득한 자.
 - 2.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B 이상인 자.
 - 3. 소정의 종합시험 및 논문심사에 합격한 자.

단, 논문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, 3학기 중 지도교수 면담후 지도교수의 논문 지도 과목을 연구지도로 대체하여, 4학기부터 추가로 6학점을 취득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. 또는 30학점을 취득하고 학위취득시험에 합격하고 연구보고서를 제출한 자.

- 4. 수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(단, 휴학기간은 제외)
- ② 논문작성과 학위취득 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과별로 내규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다.
- 제3조(학위수여자 사정)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은 학위수여 대상자를 산업정보언론대학원 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 자격을 사정한다.
- **제4조(학위 수여)**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는 산업정보언론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를 수여한다.
- **제5조(학위수여종별)** 본 산업정보언론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별은 다음과 같다.[2015.10.21.개정][2016.05.25.개정][2017.11.08.개정]

건축공학과 공학석사 도시공학과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전자・정보통신공학과 공학석사 디자인학과 디자인학석사 스포츠건강관리학과 체육학석사 소방학과 이학석사 향장학과 이학석사 e-business학과 경영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공공관리학과 행정학석사